

「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·관리 등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4. 5(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1. 4. 12(화)
- 다. 상정일자 : 2011. 4. 12(화) 제1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 
제1차 조례특위 상정·가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관광경제과장 김인섭)

- 가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개정(2010. 7. 1)에  
따른 용어 재정비
- 나.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 
위한 조항 신설로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 
소득증대, 시장 활성화에 기여
- 다. 제명변경
  - “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·관리 등에 관한 조례”를  
“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·관리 등에 관한 조례”로  
변경
- 라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용어 재정비
  - 재래시장 → 전통시장
  - 시장활성화구역 → 상권활성화구역

마.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(안 제30조의 2)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 확정

바. 국·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(안 제30조의 3)

- 영 제7조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 또는 점용료 감면을 확정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가. 본 조례안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2010. 7. 1일 개정됨에 따라 “재래시장”용어를 “전통시장”으로, “시장활성화구역”을 “상권활성화구역”으로 변경하고,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7조제2호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 또는 점용료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른 사용료등의 80%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면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
- 공유재산 사용료등의 80%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.

나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·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등의 감면을 적용(안 제30조의3)은

-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다.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역전통시장의 활성화와 보호를 위해 상위  
근거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공유재산 사용료등의 감면율을 규  
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
- 지역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보다  
많은 지원시책을 강구 추진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·관리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 조례안 1부.